

영 등 포 구 의 회  
2006년 제2차 정례회

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

# 檢 討 報 告 書

2006 12.

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# 2006년도 제3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

#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### □□ 본 추가경정예산안은

- 여의도청사 부지매입 및 설계비는, 동청사 현대화 계획에 따라 문화복지공간 확충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겸한 대체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현 청사부지로 2007년 11월 신축 결정됨에 따라 시유지 매입 및 설계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
- 영어체험학습장교실 리모델링 예산액 2억원과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예산 2억원은 남부교육청과 도림초등학교와의 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정 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추진하며
- 보건소의료서비스 공간 재배치 사업 1억 5천만원은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기능강화를 위하여 청사시설비 부족분을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연내에 공사발주가 불가능하므로 이월하는 것입니다.

## □□ 관련법규

### ○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(추가경정예산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○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(세출예산의 명시이월)

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·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## □□ 검토의견

- 여의도청사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예산액 5억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, 동청사 현대화계획에 따라 문화복지공간 확충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겸한 대체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당초 계획된 현 청사부지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고 또한 설계기간의 부족으로 년내에 집행이 어려워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고
- 영어체험학습장교실 리모델링 예산액 2억원과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예산 2억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, 관련기관인 남부교육청과 도림초등학교와의 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사업 집행이 어려워 2007년 도로 명시이월하고
- 보건소의료서비스 공간 재배치 사업 예산 1억 5천만원은 2006년 9월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년내 집행이 불가하므로,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,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12.

보고자 : 김 완 섭